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726
----------	-------

발의연월일 : 2026. 8. 24.

발 의 자 : 김종양 · 김은혜 · 이달희
박준태 · 김성원 · 김태호
이성권 · 고동진 · 배준영
박덕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취수장 인근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원칙적으로 체육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임.

그런데 이러한 일률적인 규제는 거주민의 생활권과 인근 주민들의 여가활동권을 극히 제한하고 있어 이러한 권리의 보장과 환경 보호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원시설에 준하는 체육시설 및 시설 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휴게실, 화장실, 관리실 등의 필수부대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추는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 등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의 특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2.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마을공동시설·공익시설·공동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로 철거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이전
3. 공원시설에 준하는 체육시설 및 시설 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휴게실, 화장실, 관리실 등의 필수부대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이 경우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8조의3(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의 특례)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u> <u>1.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u> <u>2.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마을공동시설 · 공익시설 · 공동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로 철거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이전</u>

3. 공원시설에 준하는 체육시설
및 시설 이용 편의증진을 위
한 휴게실, 화장실, 관리실 등
의 필수부대시설로서 기후에
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
설의 설치. 이 경우 「물환경
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방
지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야 한다.